# 급여규정

# 제 1 장 총 칙

#### 제 1 조 【목 적】

이 규정은 취업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, 계산과 지불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 제 2 조 【적용범위】

이 규정은 월급제 정규사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촉탁, 파트타이머, 임시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.

#### 제 3 조【급여체계】

- ① 급여는 기본급, 기본급 외의 급여(이하 '수당'이라 칭한다), 상여금, 퇴직금으로 구분한다.
- ② 기본급외 급여로서는 직책수당, 시간외근무수당, 자격수당, 가족수당, 당직수당, 실적수당, 연월차휴가수당이 있다. 다만, 규정에서 정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그 밖의 수당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# 제 4 조 【보수조정】

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 장 급여의 계산 및 지급

#### 제 5 조【급여일】

급여의 계산은 전월 ○일부터 당월 ○일까지로 하며 매월 ○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#### 제 6 조【급여계산방법】

- ① 결근, 지각, 조퇴, 사용외출 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는 그일수와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② 급여는 임명, 위촉, 복직 또는 증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일지라도 발령일자로부터 계산한다.
- ③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될 급여는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.
- ④ 휴직, 퇴직의 경우에는 그 월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. 그러나 징계해직 또는 정직된 자의 급여는 발령일자까지 계산한다.
- ⑤ 사원이 타직을 겸무할 때에는 겸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급여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액의 30분의 1일로 계산하되 원 미만의 자리는 사사오입한다.

### 제 7 조【급여의 지급】

- ① 급여는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액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.
-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것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.
- 1. 갑종근로소득
- 2. 의료보험
- 3. 국민연금
- 4. 주민세
- 5. 노동조합비

- 6. 회사에서의 가불금
- 7. 저축금
- 8. 각종 보험료(본인이 가입, 공제의뢰한 것)
- 9. 기타 노사합의에 의한 것

#### 제 8 조【휴직중의 급여】

휴직중인 사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.

- 1.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요양자에 대하여는 월급제사원의 경우는 통상임금을, 일급제사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.
- 2. 징집입영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일로부터 복직발령전일까지 급여를 지급치 아니한다.
- 3. 근무소집에 의한 응소기간 기타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.
- 4. 월급제사원으로서 병고휴직 또는 결근 3개월, 사고휴직 또는 결근 1개월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반액을 지급하고, 병고휴직 또는 결근 6개월, 사고휴직 또는 결근 3개월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.
- 5. 기타 전각호 이외의 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 9 조【사무인계중의 급여】

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로 인하여 특히 명을 받아 집무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당시의 급여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

#### 제10조【비상시지불】

사원이나 사원에 의하여 부양되는 가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근로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.

- 1. 출산할 때
- 2. 사망, 질병, 재해를 입었을 때

- 3. 혼례가 있을 때
- 4.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할 때
- 5.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

# 제 3 장 기본급

### 제11조【기본급】

기본급은 사원의 근무성적, 학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직급과 호봉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.

# 제12조【수습기간중의 급여】

- ① 수습기간중인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의 8할과 기타수당을 지급하되,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8할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
- ② 채용 전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기간중의 급여는 채용예정직급의 초임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하며, 기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# 제 4 장 기본급외 급여(수당)

#### 제13조【직책수당】

직책수당은 그 직무와 책임에 적응하게 지급하며, 수당금액은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14조【시간외근무수당】

- ① 평일 8시간, 토요일 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, 휴일근무시간 및 야간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.
- ② 사원이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한 시간 수에 따라

근무수당을 지급한다.

- ③ 휴일근무수당은 취업규칙 제43조에 정하는 휴일에 근무를 명한 때에는 근무한 시간수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.
- ④ 야간근무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근무를 명한 경우에 근무한 시간수에 따라 정하고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.

#### 제15조【자격수당】

자격수당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일상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.

### 제16조【가족수당】

- ①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원에 대하여 지급한다. 다만, 5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임시직과 당해월의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의 자는 제외한다.
- ② 가족수당의 지급은 사원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부양가족이 생긴 당월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없어진 때의 당월까지 지급한다.

#### 제17조【연월차유급휴가수당】

- ① 사원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.
- ② 연월차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전항의 통상임금과 휴가일에 대한 대가의 통상임금을 아울러 지급한다.

#### 제18조【특별휴가수당】

특별휴가수당은 사원이 특별휴가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승인한 특별휴가에 대하여 지급하고, 임금을 차인하지 않는다.

#### 제19조【휴업수당】

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# 제20조【기타수당】

회사는 직원의 당직수당, 실적수당 등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# 제5장 상여금

#### 제21조【상 여】

상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실적과 사원의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지급한다.

### 제22조【적 용】

- ① 각 분기별 상여금 지급시기 중 최소 1개월을 재직한 사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.
- ② 사원이 휴직, 정직 또는 사직시 매 상여금 지급분기 동안 최소 1개월을 재직한 경우에는 그실근무월수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.

#### 제23조【지급액, 지급시기의 결정】

- ① 상여금의 연간지급액은 월급여액의 400%내에서 지급하되 당해년도 사업실적의 범위내에서 지급 또는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상여금의 지급시기는 6월, 12월, 2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급횟수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### 제24조【상여의 산정기간】

상여금을 계산함에 있어 16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이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 제 6 장 퇴직금

#### 제25조【퇴직금】

- ① 종업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.
- ② 퇴직금은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.
- ③ 계속근무년수 1년을 초과한 월, 일에 대하여는 월할, 일할 계산한다.

### 제26조【퇴직금 수령권자】

- ① 퇴직위로금의 수령은 퇴직자가 생존시에는 본인 또는 그 위임자, 사망시에는 그 유족이 한다.
- ②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.

# 제 7 장 승급, 승진

#### 제27조【승 급】

승급은 정기승급과 임시승급으로 구분하고 정기승급은 매년 3월 1일부로 행하며, 임시승급은 원칙적으로 매년 ○월 ○일부로 행한다.

#### 제28조【정기승급의 내용】

- ① 승급은 기본급에 대하여 행한다.
- ② 과거 1년간의 업무의 성과, 근무상황, 책임감, 협조성, 직무수행능력 등을 인사과에 평정하여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원에 대하여 2호봉의 승급을 시킨다. 단,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에 저촉을 받는다.
- 1.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혹은 당해년도에 징계(정직처분 등)를 받은 사원은 연례승급을 시키지 아니한다.

- 2. 승급 당해년도에 감급처분을 받은 사원은 연례승급을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.
- 3. 근무성적불량 혹은 인사규정의 경미한 위반으로 견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11호봉의 승급을 시킨다.
- 4. 승급 당해년도에 사상 또는 질병, 군입영, 사사로 인한 기소 등으로 인하여 실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아래 각호와 같이 연례승급을 시킨다.
  - 가. 근속기간이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사원은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2호봉을 승급시킨 다.
  - 나.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사원은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1호봉을 승급시킨다.
  - 다.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연례승급을 시키지 아니한다.

### 제29조【임시승급】

임시승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행한다.

- 1. 다른 사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균형일 때
- 2. 승급이나 직무의 임명, 근무대체 등으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할 때
- 3. 기능이 현저히 진보하거나 특히 공로가 있을 때
- 4. 포상규정에 의한 승급에 해당한 때
- 5. 동업동종 또는 동규모 회사의 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 조정을 필요로 할때

# 제30조【승 진】

- ① 회사는 업무의 성과, 근무상황, 책임감, 협조성, 직무수행능력, 인간관계, 건강상황 등을 감안하여 승진과 직위를 명한다.
- ② 승진하는 경우 기본급은 타당한 승급이 되도록 상위급호봉에 책정한다.

부 칙

# 제 1 조【시행일】

이 규정은 ○년 ○월 ○일부터 시행한다.